



「 제155장 은행업조례 」

최종 개정일 : 2015년 01월 01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지역의 은행업무 및 예금 접수 업무를 관장하고 인가기구의 감독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예금인의 예금을 보호하며 은행업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여 화폐 거래의 감독관리를 정비하고 은행업과 관련된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각 장은 전문금융경영인, 전문금융경영인과 은행업무를 관장하는 인가기구, 현지 및 해외 은행, 사무처, 대표연락처, 화폐의 거래, 은행업과 관련된 광고, 자본 유동성, 은행업과 관련한 재심재판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 22부 15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원문	번역문
<p style="text-align: center;">法例目錄:</p> <p>第155章 詳題</p> <p>第I部 導言</p> <p>第II部 委任、金融管理專員的職能、金融管理專員的報告及行政長官發出指示的權力#</p> <p>第III部 銀行業務及接受存款業務只准由認可機構經營</p> <p>第IV部 認可</p> <p>第V部 認可的撤銷</p> <p>第VI部 認可的暫停</p> <p>第VII部 認可的轉讓</p> <p>第VIII部 本地分行、本地辦事處、本地代表辦事處及費用*</p> <p>第IX部 海外分行、海外代表辦事處、費用及海外銀行法團*</p> <p>第X部 管制認可機構的權力</p> <p>第XI部 審計及會議</p> <p>第XII部 由認可機構披露資料</p> <p>第XIII部 認可機構的擁有及管理</p> <p>第XIV部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p> <p>第XV部 認可機構貸款的限度及認可機構的權益須受的限度</p>	<p style="text-align: center;">목록</p> <p>제155장 제목</p> <p>제I부 서언</p> <p>제II부 위원회의 위임, 전문금융경영인의 직능, 전문금융경영인의 보고 및 행정장관이 내린 지시의 권한</p> <p>제III부 은행업무 및 신탁예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기구의 경영</p> <p>제IV부 인가</p> <p>제V부 인가의 취소</p> <p>제VI부 인가의 잠정 중지</p> <p>제VII부 인가의 양도</p> <p>제VIII부 현지 은행, 현지 사무처, 현지 대표연락처 및 비용</p> <p>제IX부 해외 지점은행, 해외 대표연락처, 비용 및 해외은행법인</p> <p>제X부 인가기구 권한의 제재</p> <p>제XI부 회계감사 및 회의</p> <p>제XII부 인가기구가 공개하는 자료</p> <p>제XIII부 인가기구의 소유 및 경영</p> <p>제XIV부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p>



<p>第XVI部 廣告、申述及“銀行”稱號的使用</p> <p>第XVIA部 資本規定</p> <p>第XVIB部 流動性規定</p> <p>第XVIC部 根據第60A(1)、97C(1)或97H(1)條訂立的規則的實務守則</p> <p>第XVII部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p> <p>第XVIIA部 銀行業覆核審裁處#</p> <p>第XVIII部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p> <p>第XIX部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p> <p>第XX部 對認可機構的調查</p> <p>第XXA部 貨幣經紀</p> <p>第XXI部 雜項條文</p> <p>第XXII部 過渡、保留及廢除條文</p>	<p>제XV부 인가기구 대출의 제한 및 인가기구의 수익에 대한 한도</p> <p>제XVI부 광고, 진술 및 “은행” 칭호의 사용</p> <p>제XVIA부 자본 규정</p> <p>제XVIB부 유동성 규정</p> <p>제XVIC부 제60A(1)조, 제97C(1)조 또는 제97H(1)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의 실무수칙</p> <p>제XVII부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p> <p>제XVIIA부 은행업재심재판처#</p> <p>제XVIII부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p> <p>제XIX부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p> <p>제XX부 인가기구에 대한 조사</p> <p>제XXA부 화폐의 거래</p> <p>제XXI부 기타 조문</p> <p>제XXII부 경과조문, 보류조문 및 폐지 조문</p>
--	---

<p>第155章 詳題 第I部 導言 第1條 簡稱 第2條 釋義 第3條 適用範圍</p>	<p>제155장 제목 제I부 서언 제1조 약칭 제2조 해석 제3조 적용범위</p>
<p>第II部 委任、金融管理專員的職能、金融管理專員的報告及行政長官發出指示的權力# 第4條 銀行業務諮詢委員會 第5條 接受存款公司諮詢委員會 第6條 (由1992年第82號第14條廢除) 第7條 金融管理專員的職能 第8條 (由1992年第82號第16條廢除) 第9條 金融管理專員的報告 第10條 行政長官發出指示的權力</p>	<p>제II부 위원회의 위임, 전문금융경영인의 직능, 전문금융경영인의 보고 및 행정장관이 내린 지시의 권한 제4조 은행업무자문위원회 제5조 신탁예탁회사자문위원회 제6조 (1992년제82호제14조로 폐지) 제7조 전문금융경영인의 직능 제8조 (1992년제82호제16조로 폐지) 제9조 전문금융경영인의 보고 제10조 행정장관의 지시 하달의 권한</p>
<p>第III部 銀行業務及接受存款業務只准由認可機構經營 第11條 銀行業務只限由持牌銀行經營 第12條 接受存款業務的限制 第13條 批給豁免的權力 第14條 接受存款公司不得接受少於</p>	<p>제III부 은행업무 및 신탁예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기구의 경영 제11조 은행업무는 허가증을 소유한 은행만이 경영할 수 있음 제12조 예금접수업무의 제한 제13조 면제에 관한 권한</p>

<p>指明款項的存款 第14A條 多用途儲值卡只可由認可機構發行等</p>	<p>제14조 신탁예탁회사는 지정된 액수 이하의 예금을 접수할 수 없음 제14A조 다용도예금카드는 오직 인가기구만이 발행할 수 있음 등</p>
<p>第IV部 認可 第15條 認可的申請等 第16條 認可的批給或拒絕等 第17條 擬成立的公司的認可申請 第18條 對認可的更改 第19條 認可機構須繳付的費用 第20條 認可機構的紀錄冊等 第21條 將名稱載入紀錄冊或將名稱從紀錄冊上刪除以及暫停認可的公布</p>	<p>제IV부 인가 제15조 인가의 신청 등 제16조 인가의 발급 및 거절 등 제17조 설립 예정 회사의 인가 신청 제18조 인가의 교정 제19조 인가기구 필수 납부비용 제20조 인가기구의 기록부 등 제21조 명칭의 기록부 등록 또는 명칭의 기록부 삭제 및 잠정인가의 공포</p>
<p>第V部 認可的撤銷 第22條 認可的撤銷 第23條 撤銷認可之程序及效力</p>	<p>제V부 인가의 취소 제22조 인가의 취소 제23조 인가취소의 절차 및 효력</p>
<p>第VI部 認可的暫停 第24條 臨時暫停認可 第25條 暫停認可 第26條 陳詞的機會 第27條 暫停認可的效力</p>	<p>제VI부 인가의 잠정 중지 제24조 임시 잠정인가 제25조 잠정인가 제26조 진술의 기회 제27조 잠정인가의 효력</p>
<p>第VII部 認可的轉讓</p>	<p>제VII부 인가의 양도</p>



第28條 認可的轉讓	제28조 인가의 양도
第29條 申請轉讓	제29조 양도의 신청
第30條 轉讓證明書等	제30조 양도증명서 등
第31條 出讓人及受讓人的法律責任及特權	제31조 매도인 및 수양인의 법률 책임 및 특권
第32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2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3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3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4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4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5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5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6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6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7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7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8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8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39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39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40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40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41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41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42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42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43條 (由1995年第49號第6條廢除)	제43조 (1995년제49호제6조로 폐지)

第VIII部 本地分行、本地辦事處、本地代表辦事處及費用*

- 第44條 管制本地分行的設立等
- 第45條 就本地分行而支付的費用
- 第45A條 在本地辦事處開始營業須予通知
- 第46條 管制本地代表辦事處的設立等
- 第47條 本地代表辦事處的資料提供及審查
- 第48條 就本地代表辦事處而支付的費用

제VIII부 현지 은행, 현지 사무처, 현지 대표연락처 및 비용

- 제44조 현지 지점은행의 설립에 관한 제재 등
- 제45조 현지 지점은행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제45A조 현지 사무실에서 영업 개시에 관한 통지
- 제46조 현지 사무처 설립 규제 등
- 제47조 현지 대표연락처의 자료 제공 및 심사
- 제48조 현지 대표연락처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第IX部 海外分行、海外代表辦事處、費用及海外銀行法團*

- 第49條 管制海外分行及海外代表辦事處的設立等
- 第50條 關於海外分行及海外代表辦事處的條件
- 第51條 就海外分行及海外代表辦事處而支付的費用
- 第51A條 管制海外銀行法團的設立等

제IX부 해외 지점은행, 해외 대표연락처, 비용 및 해외은행법인

- 제49조 해외 지점은행 및 해외 대표연락처의 설립 등
- 제50조 해외 지점은행 및 해외 대표연락처에 관한 조건
- 제51조 해외 지점은행 및 해외 대표연락처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제51A조 해외은행법인의 설립 제재 등

第X部 管制認可機構的權力

- 第52條 金融管理專員的權力

제X부 인가기구 권한의 제재

- 제52조 전문금융경영인의 권한

第53條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的權力	제53조 행정장관과 행정회의의 권한
第53A條 就根據第52(1)(B)或(C)條發出的指示等的通知	제53A조 제52(1)(B) 또는 (C)조에 근거하여 하달한 지시 등에 대한 통지
第53B條 根據第52(1)(C)條發出的指示的效力	제53B조 제52(1)(C)에 근거하여 하달한 지시의 효력
第53C條 經理人的權力	제53C조 경영인의 권한
第53D條 原訟法庭可批准某些決議	제53D조 원소송법정이 의결할 수 있는 비준
第53E條 原訟法庭可作出某些命令	제53E조 원소송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
第53F條 根據第52(1)(B)或(C)條發出的指示的期限	제53F조 제52(1)(B) 또는 (C)조에 근거하여 하달하는 명령의 기한
第53G條 顧問、經理人及助理	제53G조 고문, 경영인 및 보조인
第53H條 對經理人的妨礙等	제53H조 경영인에 대한 장애 등
第54條 (由1995年第49號第16條廢除)	제54조 (1995년제49호제16조로 폐지)
第55條 認可機構的審查及調查等	제55조 인가기구의 심사 및 조사 등
第56條 認可機構簿冊的交出等	제56조 인가기구장부의 제출 등
第57條 (由1995年第49號第16條廢除)	제57조 (1995년제49호제16조로 폐지)
第58條 (由1995年第49號第16條廢除)	제58조 (1995년제49호제16조로 폐지)
第58A條 就有關人士採取紀律行動	제58A조 관련 인사에 대한 기율 행위

第XI部 審計及會議

第59條 審計

第59A條 就核數師而發出的通知

第59B條 認可機構就其財政年度結束須發出的通知等

第60條 經審計的資產負債表等的公布

第60A條 向公眾人士披露關於財務狀況的資料

第61條 核數師向金融管理專員傳達資料

第62條 (由1990年第43號第6條廢除)

第XII部 由認可機構披露資料

第63條 須向金融管理專員呈交的申報表及資料

第63A條 核數師須向金融管理專員報告對認可機構的財務狀況在很大程度上有不良影響的事宜

第63B條 在若干情況下註冊機構的核數師須向金融管理專員呈交報告

第64條 關於持有股份的資料等

第65條 章程的修改

第66條 認可機構停止接受存款時須通知金融管理專員

第67條 報告無能力履行義務的責任

제XI부 회계감사 및 회의

제59조 회계감사

제59A조 회계감사원에 대해 발송하는 통지

제59B조 인가기구가 매해 재정년도 결과에 대해 발송하는 통지 등

제60조 회계감사를 거친 자산부채표 등의 공포

제60A조 대중에게 공개하는 재정상황 관련 자료

제61조 회계감사원의 전문금융경영인에게 전송하는 자료

제62조 (1990년제43호제6조로 폐지)

제XII부 인가기구가 공개하는 자료

제63조 전문금융경영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표 및 자료

제63A조 회계감사원의 전문금융경영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황보고서가 큰 범주에서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침에 관한 사항

제63B조 일부 정황 하에서 등록기관의 회계감사원이 반드시 전문금융경영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제64조 지분에 관한 자료 등

제65조 정관의 개정

제66조 인가기구가 예금 접수를

第68條 由香港以外地方的當局進行的審查

중지할 시 반드시 전문금융경영인에게 통보해야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의무이행능력이 없음의 보고에 관한 책임

제68조 홍콩 이외 지방 당국이 진행하는 심사

第XIII部 認可機構的擁有及管理

제XIII부 인가기구의 소유 및 경영

第69條 合併等須獲得批准

제69조 합병 등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비준 사항

第70條 適用於擬成為在香港成立為法團的認可機構控權人的人及若干現時為在香港成立為法團的認可機構控權人的條款

제70조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인가기구 통제인이 되려는 자 및 일부 현재 홍콩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인가기구 통제인에 적용하는 조항

第70A條 就現有控權人提出反對

제70A조 기존 통제인에 대한 반대의 제기

第70B條 對股份的限制及股份的售賣

제70B조 주식에 대한 제한 및 주식의 매각

第70C條 禁止某些人以間接控權人的身分行事

제70C조 일부 간접 통제인의 신분으로서의 권리행사의 금지

第70D條 對企圖逃避限制的懲罰

제70D조 도피 제한 시도에 대한 징벌

第71條 行政總裁及董事須得金融管理專員的同意

제71조 행정총재 및 이사가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전문금융경영인의 동의

第71C條 須得到金融管理專員同意方可成為註冊機構的主管人員

제71C조 반드시 전문금융경영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등록기구의

第71D條 主管人員的委任

第71E條 就尋求金融管理專員給予第71C(1)條所指的同意以成為主管人員的人給予臨時同意

第71F條 就某些註冊機構而言有關

<p>第71C及71D條的過渡性條文</p> <p>第72條 (由1991年第95號第20條廢除)</p> <p>第72A條 金融管理專員可規定指明的人呈交資料</p> <p>第72B條 關於經理的委任等的通知</p> <p>第73條 禁止某些人以認可機構的僱員的身分行事，但得金融管理專員同意者除外</p> <p>第74條 行政總裁的委任</p>	<p>주관인원이 될 수 있음</p> <p>제71D조 주관인원의 위임</p> <p>제71E조 전문금융경영인의 채용에 있어 제71C(1)조가 규정하는 동의로써 주관인원이 되려는 자에 제공하는 임시성 동의</p> <p>제71F조 일부 등록기구에 대해 제71C 및 71D조에 관한 경과성 조문</p> <p>제72조 (1991년제95호제20조로 폐지)</p> <p>제72A조 전문금융경영인이 특정인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명할 수 있음</p> <p>제72B조 경영의 위임 등에 관한 통지</p> <p>제73조 일부 사람들에 대해 인가기구의 피고용인 신분으로서 권리 행사를 금지하나 단, 전문금융경영인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p> <p>제74조 행정총재의 위임</p>
<p>第XIV部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p> <p>第75條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p> <p>第76條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p> <p>第77條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p>	<p>제XIV부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p> <p>제75조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p> <p>제76조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p> <p>제77조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p>

除)	폐지)
第78條 (由1991年第95號第23條廢除)	제78조 (1991년제95호제23조로 폐지)
第XV部 認可機構貸款的限度及認可機構的權益須受的限度	제XV부 인가기구 대출의 제한 및 인가기구의 수익에 대한 한도
第79條 釋義及適用範圍	제79조 해석 및 적용범위
第79A條 金融管理專員可規定本部的條文以綜合基礎而適用於某些認可機構	제79A조 전문금융경영인은 이 부의 조문을 종합적으로 기초하여 일부 인가기구에 적용할 수 있음
第80條 以本身的股份所作的保證而放貸款項等	제80조 자체 주식으로 하는 보증 또는 대출금 등
第81條 認可機構放款的限度	제81조 인가기구 대출의 한도
第82條 金融管理專員可就認可機構的營業手法刊登守則	제82조 전문금융경영인은 인가기구의 영업방식에 대해 수칙을 등재할 수 있음
第83條 向董事等放款的限度	제83조 이사 등에 대한 대출의 한도
第84條 (由1991年第95號第29條廢除)	제84조 (1991년제95호제29조로 폐지)
第85條 向僱員放款的限度	제85조 피고용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第86條 款項存放在外地銀行時金融管理專員的權力	제86조 대금을 외지 은행에 예탁할 시 전문금융경영인의 권한
第87條 認可機構持有股份的限度	제87조 인가기구 지분의 한도
第87A條 在香港成立為法團的認可機構獲取公司的股本	제87A조 홍콩에서 법인으로 설립되는 인가기구가 획득하는 회사의 주식
第88條 認可機構持有土地權益的限度	제88조 인가기구의 소유 토지권
第89條 (由1991年第95號第33條廢除)	
第90條 持有第83、87及88條所指項	

<p>目的總額限制</p> <p>第91條 遵從第80、81、83、85、86、87、88或90條的證明</p>	<p>리의 한도</p> <p>제89조 (1991년제95호제33조로 폐지)</p> <p>제90조 제83조, 제87조 및 제88조가 규정하는 항목 소유의 총액 제한</p> <p>제91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또는 제90조 준수의 증명</p>
<p>第XVI部 廣告、申述及“銀行”稱號的使用</p> <p>第92條 發出關於存款的廣告等的罪行</p> <p>第93條 欺詐誘使他人作出存款</p> <p>第94條 在某些情況下誘使他人作出存款的侵權法律責任</p> <p>第95條 認可機構發出虛假等的廣告</p> <p>第96條 某些受禁止的申述</p> <p>第97條 使用“銀行”名稱的限制</p> <p>第97A條 關於認可身分的虛假陳述</p>	<p>제XVI부 광고, 진술 및 “은행” 칭호의 사용</p> <p>제92조 예금의 광고 등의 방출에 관한 범죄행위</p> <p>제93조 타인이 예금을 유도하는 사기 행위</p> <p>제94조 일부 정황 하에서 타인이 예금을 유도하는 침권에 대한 법률적 책임</p> <p>제95조 인가기구의 허위 내용 발송 등의 광고</p> <p>제96조 일부 금지성 진술</p> <p>제97조 “은행”명칭 사용의 제한</p> <p>제97A조 인가 신분에 관한 허위 진술</p>
<p>第XVIA部 資本規定</p> <p>第97B條 目的</p> <p>第97C條 資本規定</p>	<p>제XVIA부 자본 규정</p> <p>제97B조 목적</p> <p>제97C조 자본의 규정</p>

<p>第97D條 訂明通知規定</p> <p>第97E條 補救行動</p> <p>第97F條 金融管理專員可就個別認可機構更改資本規定規則</p> <p>第XVIB部 流動性規定</p> <p>第97G條 目的</p> <p>第97H條 流動性規定</p> <p>第97I條 訂明通知規定</p> <p>第97J條 補救行動</p> <p>第97K條 金融管理專員可就個別認可機構更改流動性規定規則</p> <p>第XVIC部 根據第60A(1)、97C(1)或97H(1)條訂立的規則的實務守則</p> <p>第97L條 第XVIC部的釋義</p> <p>第97M條 實務守則</p> <p>第97N條 在覆核審裁處進行的程序中使用經批准實務守則</p> <p>第XVII部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p> <p>第98條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p> <p>第98A條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p>	<p>제97D조 통지 규정의 제정</p> <p>제97E조 구제행위</p> <p>제97F조 전문금융경영인은 개별 인가기구에 자본 규정규칙을 수정할 수 있음에 대한 규정</p> <p>제XVIB부 유동성 규정</p> <p>제97G조 목적</p> <p>제97H조 유동성 규정</p> <p>제97I조 통지 규정의 제정</p> <p>제97J조 구제행위</p> <p>제97K조 전문금융경영인은 개별 인가기구에 유동성 규정규칙을 수정할 수 있음에 대한 규정</p> <p>제XVIC부 제60A(1)조, 제97C(1)조 또는 제97H(1)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의 실무수칙</p> <p>제97L조 제XVIC부의 해석</p> <p>제97M조 실무수칙</p> <p>제97N조 심사재판처에서 진행하는 재심절차 중 비준을 받은 실무수칙의 사용에 관한 규정</p> <p>제XVII부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p> <p>제98조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p> <p>제98A조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p>
---	---

除) 第99條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	폐지) 제99조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
第100條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	제100조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
第101條 (由2012年第3號第9條廢除)	제101조 (2012년제3호제9조로 폐지)
第XVIIA部 銀行業覆核審裁處#	제XVIIA부 은행업재심재판처#
第101A條 設立銀行業覆核審裁處*	제101A조 은행업재심재판처의 설립*
第101B條 向覆核審裁處提出申請	제101B조 재심재판처에 대한 신청 제출
第101C條 覆核審裁處作出的覆核裁定	제101C조 재심재판처의 재심 재정
第101D條 覆核審裁處的裁定的登記	제101D조 재심재판처의 재정의 등기
第101E條 覆核審裁處的權力	제101E조 재심재판처의 권한
第101F條 覆核審裁處的聆訊須以非公開形式進行	제101F조 재심재판처의 청문은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함
第101G條 強迫提供的會導致入罪的證據的使用	제101G조 강제적으로 제공한 경우 사람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증거의 사용에 관한 규정
第101H條 向上訴法庭提出上訴	제101H조 상소법정에 제출하는 상소
第101I條 終審法院首席法官訂立規則的權力	제101I조 최종심법원의 수석재판관의 규칙제정 권한
第XVIII部 (由2012年第3號第13條	제XVIII부 (2012년제3호제13조로



廢除)	폐지)
第102條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	제102조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
第103條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	제103조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
第104條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	제104조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
第105條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	제105조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
第106條 (由2012年第3號第13條廢除)	제106조 (2012년제3호제13조로 폐지)
第XIX部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XIX부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07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07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08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08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09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09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10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10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11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11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12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12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13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13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第114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제114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p>除) 第115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 第116條 (由1990年第43號第8條廢除)</p> <p>第XX部 對認可機構的調查 第117條 代財政司司長調查 第118條 審查員的權力及與調查有關的罪行</p> <p>第XXA部 貨幣經紀 第118A條 只有核准貨幣經紀可以貨幣經紀身分行事 第118B條 核准的申請 第118C條 核准申請的決定 第118D條 核准的撤銷 第118E條 撤銷核准的程序及效力 第118F條 核准貨幣經紀須繳付的費用</p> <p>第XXI部 雜項條文 第119條 由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決定銀行業務或接受存款業務是否正在經營 第119A條 認可機構不得設定某些押</p>	<p>폐지) 제115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 제116조 (1990년제43호제8조로 폐지)</p> <p>제XX부 인가기구에 대한 조사 제117조 재정사 사장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조사 제118조 심사원의 권한 및 조사와 관련된 범죄행위</p> <p>제XXA부 화폐의 거래 제118A조 화폐거래의 비준으로만 이 화폐거래를 할 수 있는 신분이 됨에 관한 규정 제118B조 비준의 신청 제118C조 비준 신청의 결정 제118D조 비준의 취소 제118E조 비준 취소의 절차 및 효력 제118F조 화폐거래의 비준에 필요한 납부 비용</p> <p>제XXI부 기타 조문 제119조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회동하여 은행업무를 결정하거나 또는 예금접수업무를 경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p>
---	--



記並須將某些民事或刑事法律程序通知金融管理專員	제119A조 인가기구는 담보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일부 민사 또는 형사 법률절차를 전문금융경영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
第120條 公事保密	제120조 공사 비밀의 엄수
第121條 披露與認可機構有關的資料	제121조 인가기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第122條 認可機構的清盤	제122조 인가기구의 청산
第123條 董事、行政總裁、經理、受託人、僱員及代理人的罪行	제123조 이사, 행정총재, 경영인, 수탁인, 고용인 및 대리인의 범죄 행위
第124條 禁止職員收取佣金	제124조 직원의 커미션 수수 금지
第125條 搜查令及檢取	제125조 수색령 및 압류
第126條 董事等被檢控時的免責辯護	제126조 이사 등 고발 시의 면책 변호
第126A條 提出投訴或告發的時間限制	제126A조 투서 또는 고발 제출의 시간 제한
第127條 彌償	제127조 보상
第128條 (由1991年第95號第44條廢除)	제128조 (1991년제95호제44조로 폐지)
第129條 違反本條例或由本條例廢除的任何條例的合約的有效性	제129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로 폐지된 모든 조례를 위반한 계약의 유효성
第130條 (由1995年第49號第41條廢除)	제130조 (1995년제49호제41조로 폐지)
第131條 費用、開支等的追討	제131조 비용, 지급 등의 독촉
第131A條 須付予外匯基金的費用	제131A조 외환기금에 지급하는
第132條 語文的使用	
第132A條 上訴	
第132B條 本條例所訂罪行的罰款等級	
第133條 金融管理專員指明表格的權力	



<p>第134條 通知的送達</p> <p>第134A條 金融管理專員對認可附加條件前須作諮詢等</p> <p>第134B條 金融管理專員對核准證明書附加條件前須作諮詢等</p> <p>第135條 修訂附表의 權力</p> <p>第136條 律政司司長의 同意</p> <p>第137條 (已將修訂編入)</p> <p>第137A條 《賭博條例》의 條文의 豁除</p> <p>第137B條 訂明票據</p>	<p>비용</p> <p>제132조 언어의 사용</p> <p>제132A조 소제기</p> <p>제132B조 이 조례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벌금의 등급</p> <p>제133조 전문금융경영인의 양식 지정에 관한 권한</p> <p>제134조 통지의 송달</p> <p>제134A조 전문금융경영인의 인가에 대해 부가적 조건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자문 등</p> <p>제134B조 전문금융경영인의 증명서 비준에 대해 부가적 조건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자문 등</p> <p>제135조 첨부문건 개정의 권한</p> <p>제136조 율정사(법무부) 사장의 동의</p> <p>제137조 (개정 내용 기반영)</p> <p>제137A조 《도박조례》의 조문의 해제</p> <p>제137B조 어음의 증명</p>
<p>第XXII部 過渡、保留及廢除條文</p> <p>第138條 釋義</p> <p>第139條 前委員會의 委任成員須繼續任職</p> <p>第140條 (由1992年第82號第23條廢</p>	<p>제XXII부 경과조문, 보류조문 및 폐지 조문</p> <p>제138조 해석</p> <p>제139조 전 위원회의 위임 구성원은 계속 임직에 관한 규정</p>

<p>除)</p> <p>第141條 獲授權及受僱的人士須繼續獲授權和受僱</p> <p>第142條 牌照等的前申請當作為根據本條例提出的申請</p> <p>第143條 前牌照等當作為根據本條例批給的牌照等</p> <p>第144條 某些費用的繳付日期</p> <p>第145條 附加在前牌照等的條件當作為根據本條例附加的條件</p> <p>第146條 前註冊等的暫停當作為根據本條例作出的暫停</p> <p>第147條 根據前《銀行業條例》第IV部所作的行動等當作為根據本條例第X部所作的行動</p> <p>第148條 與某些聯繫證明書有關的過渡條文</p> <p>第148A條 與第87條有關的過渡條文</p> <p>第149條 與藉《1990年銀行業(修訂)條例》作出的修訂有關的過渡條文</p> <p>第150條 與藉《1991年銀行業(修訂)(第2號)條例》作出的修訂有關的過渡條文</p> <p>第151條 與《1992年外匯基金(修訂)條例》#有關的保留條文</p> <p>第152條 與《1995年銀行業(修訂)條例》#有關的過渡條文</p>	<p>제140조 (1992년제82호제23조로 폐지)</p> <p>제141조 수권받은 사람 및 피고용인이 계속 수권받고 고용됨에 관한 규정</p> <p>제142조 허가증 등의 전 신청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한 신청으로 간주함에 관한 규정</p> <p>제143조 전 허가증 등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발급한 허가증 등으로 간주함에 관한 규정</p> <p>제144조 일부 비용의 납부일시</p> <p>제145조 전 허가증 등에 부가된 조건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가된 조건으로 간주함에 관한 규정</p> <p>제146조 전 등록 등의 잠정 중지를 이 조례에 근거한 잠정 중지로 간주함에 관한 규정</p> <p>제147조 전 《은행업조례》 제IV부에 따라 취한 행동 등을 이 조례 제X부에 근거한 행동으로 간주함에 관한 규정</p> <p>제148조 일부 연계 증명서와 관련된 경과성 조문</p> <p>제148A조 제87조와 관련된 경과성 조문</p> <p>제149조 《1990년은행업(개정)조례》에 이은 개정과 관련된 경과성 조문</p>
---	---

<p>第153條 與《1997年銀行業(修訂)條例》有關的過渡條文</p>	<p>제150조 <<1991년은행업(개정)(제2호)조례>>에 이은 개정과 관련된 경과성 조문 제151조 《1992년외환기금(개정)조례》과 관련된 보류조문 제152조 《1995년은행업(개정)조례》와 관련된 경과성 조문 제153조 《1995년은행업(개정)조례》와 관련된 경과성 조문</p>
<p>附表1 指明期間及指明款項</p>	<p>첨부1 기간의 명시 및 액수의 명시</p>
<p>附表2 費用</p>	<p>첨부2 비용</p>
<p>附表3 (由2005年第19號第7條廢除)</p>	<p>첨부3 (2005년제19호제7조로 폐지)</p>
<p>附表4 (由2012年第3號第17條廢除)</p>	<p>첨부4 (2012년제3호제17조로 폐지)</p>
<p>附表5 適用於訂明廣告的規定</p>	<p>첨부5 광고 제정에 적용하는 규정</p>
<p>附表6 指明票據</p>	<p>첨부6 어음의 명시</p>
<p>附表7 認可的最低準則</p>	<p>첨부7 인가의 최저준칙</p>
<p>附表8 撤銷認可的理由</p>	<p>첨부8 인가취소의 이유</p>
<p>附表9 認可機構的經理人的權力</p>	<p>첨부9 인가기구 경영인의 권한</p>
<p>附表10 (由1999年第42號第18條廢除)</p>	<p>첨부10 (1999년제42호제18조로 폐지)</p>
<p>附表11 核准為貨幣經紀的最低準則</p>	<p>첨부11 화폐거래 비준의 최저준칙</p>
<p>附表12 撤銷貨幣經紀核准的理由</p>	<p>첨부12 화폐거래 비준 취소의 이유</p>
<p>附表13 罪行的罰款等級</p>	<p>첨부13 화폐거래 비준 취소의 이유</p>
<p>附表14 為經理的定義而指明的認可</p>	<p>첨부14 화폐거래 비준 취소의 이유</p>



機構事務或業務

附表15 關於銀行業覆核審裁處的條文*

첨부13 범죄행위의 벌금 등급

첨부14 경영의 정의 및 인가기구 사무 또는 업무의 명시

첨부15 은행업재심재판처에 관한 조문